

제 호

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등록증

-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- 상호:
- 주소:
- 석유정제시설 소재지:
- 생산유종: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직인